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범죄피해자 심리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Systematic damage recovery through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crime victims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심리적 지원방안 연구】

2023년 8월

인하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심리상담전공

황 동 기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범죄피해자 심리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Systematic damage recovery through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crime victims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심리적 지원방안 연구】

2023년 8월

지도교수 정 윤 경

인하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심리상담전공

황 동 기

본 연구보고서를 황동기의 석사학위
연구보고서로 인정함

2023년 8월

지도교수 정 윤 경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II. 선행연구의 고찰	5
III. 범죄 발생 현황과 피해 유형	7
1. 최근의 범죄 발생 추이 및 표적 사건 사례	
2.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정서적 특징	
IV. 각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6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2. 주요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3. 주요국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	
4.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체계 현황과 대책	
5. 경찰의 범죄피해자 피해복구를 위한 심리적 지원 현황	
V.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 체계 개선방안	44
1. 상담사와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	
2.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정비	
3. 범죄피해자 심리센터의 역할 강화	
4. 피해자 입장에 입각한 심리지원체계 구성	
5. 유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범죄피해자의 상담 관련 홍보 및 협력 강화	
7. 비대면 상담 등 다양한 상담 방식의 도입	
V. 결론	51
<참고문헌>	52

< 표·그림 목차 >

【표 목차】

<표 1> 최근 3년간 전체범죄 발생 건수	7
<표 2> 최근 3년간 강력범죄 발생 건수	8
<표 3> 범불안장애에 대한 주요 진단기준	11
<표 4>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및 진단기준	12
<표 5> 우리나라의 기관별 심리지원 제도 매뉴얼	17
<표 6> 경찰의 응급심리지원 지원내용	42
<표 7> 경찰청 연도별 응급 심리지원 활동	43
<표 8> 경찰청 회복적 경찰 활동 시범운영 결과	43
<표 9> 최근 5년간 범죄 발생 현황(2017년~2021년)	49

【그림 목차】

<그림 1> NOVA 웹사이트(www.try-nova.org)	32
<그림 2> NCVC 웹사이트(victimsofcrime.org)	34

범죄피해자 심리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심리적 지원방안 연구】

황 동 기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각종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는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책무이다.

특히 범죄피해자는 본인에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가지게 된다. 국가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한 피해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 트라우마 심리 치유를 위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심리적 지원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사법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은 해방 후부터 민주화 시대로 넘어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다양한 제도가 생성되었으며 형사 소송법 등의 개정 등을 통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범죄자와 비교하면 경시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각종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죄가 없는 국민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손실을 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만큼이나 중요하고 경중을 따지기 힘들 것이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세심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범죄(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우리나라와 외국의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연구 사례 등 비교하여보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피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심리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들이 일상의 삶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심리지원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제도 도입 경과

“범죄피해자”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제3조), 구조 대상 범죄 피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를 입는 것”이라 정의하여(제4조),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 강요된행위, 긴급피난 등의 피해도 범죄 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여(제6조 2항)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와 경찰청 훈령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상 범죄피해자를 같게 정의하고 있으나, 형법상 범죄행위뿐 아니라 위협에 처한 국민까지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삼아 「범죄피해자 보호법」보다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도 사회적 재난에 따른 ‘광의의 범죄피해자’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017년 동춘동 여아 유괴사건¹⁾ 이후 벌어진 일련의 소동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피해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마치 관광이라도 온 듯 사건 현장으로 찾아온 일부 외부인들이 인증사진을 찍는 등의 엽기적 행동을 버젓이 자행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언론과 방송 등 각종 미디어의 자극적이

1)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인 김모 양(당시 18세)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A양을 유괴 살인한 사건. (“8세 아동 유괴·살해…용의자 16세 여성 청소년 검거” 머니투데이 2017.3.30.)

고 무분별한 보도는 더욱 치명적인 2차 가해 요소가 되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범죄 피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게 될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유가족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불안과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는 범죄 예방과 근절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문제에서도 무한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범죄 피해로 인한 상처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에 관한 보호 대책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더욱이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정을 직접 신고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실제 피해에 이르는 사건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범죄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제1항),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제2항),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3항) 라고 범죄피해자 보호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차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지원제도이다. △경찰청의 강력범죄 현장 정리와 피해자에 대한 여비 지급제도, △법무부의 범죄 피해구조금 제도,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이전비 지원제도, △검찰청의 피해자 보호시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 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 등이 대표적인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제도이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둘째, 법률적 지원제도이다. △법무부의 무료 법률구조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진술 조력인 제도, 법률상담터 사업, △검찰청의 형사조정제도, △법원의 배상명령제도, 지급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지원제도이다. △경찰청의 피해자 심리 전문인력 지원(CARE 요원 등), △법무부의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경찰청·이화 뇌 융합과학연구원 공동의 외상 노출 피해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경찰청의 회복적 경찰 활동, 범죄 피해 평가제도,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예우 등에 관한 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 분쟁 민원 해결제도와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구제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거래 분쟁 조정제도,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포싱 피해금 환급제도, △경찰청·한국건강관리협회의 무료 건강검진 바우처, △경찰청·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의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³⁾

이처럼 여러 국가기관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피해자보호에 관한 국가기관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으며, 총괄 관리·지휘할 국가기관이 없다는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여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중 심리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실제 범죄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초기에 지원해 줌으로써, 불안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지속되는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초기에 심리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후 추가범죄 예방과 경제적·법적 지원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각종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측면에서의 보호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이 밖에도 경찰청은 ‘창경 70주년’이 되던 2015년에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보호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피해자들의 조기 회복과 정상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적 치료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송재영(2018)은, “범죄피해자지원 구조의 개선방안 연구”(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기관별로 수립됨으로서 상호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기관 간 업무 연계가 되지 않아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원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의 연계 관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신원호(2016)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대검찰청 교육훈련 연구보고서, 2016)에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입법 현황과 형사사법적 측면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국가의 의무라 규정하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성인(2016)은, “사례분석을 통해 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필요성”(2016년 범죄방지재단 춘계 학술 세미나, 2016)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 10년이 지난 즈음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과 정보 제공 의무화 등 많은 면에서 발전을 이루었고 국민적 관심도 제고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불안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무형의 지원뿐만 아니라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지원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소라(2017)는,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전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에서, 관 주도형의 지원정책을 비롯하여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사업이 안정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지원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체계 개선, 피해자의 형사절차와의 연계 강화, 민간주도형 범죄피해자통합네트워크센터 구축, 지원단체 인력의 발굴과 전문성 강화 등을 주장한다.

최인섭, 이순래, 조균석(2006)은, 범죄피해자의 심각성에 대하여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높을 것이며, 여성과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배우자와 없는 사람들,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최근 증가하는 싱글족, 무직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신체적, 심리적인 피해의 심각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신의 상태를 의지 받고 지지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적을수록 정신적 피해나 그로 인한 후유증이 더 크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와 대비되는 선행연구도 있다. 김희균(2016년)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가 ‘전문인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인력과 구조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피해자보호 종합대책을 강조하지만, 저자의 경우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런 접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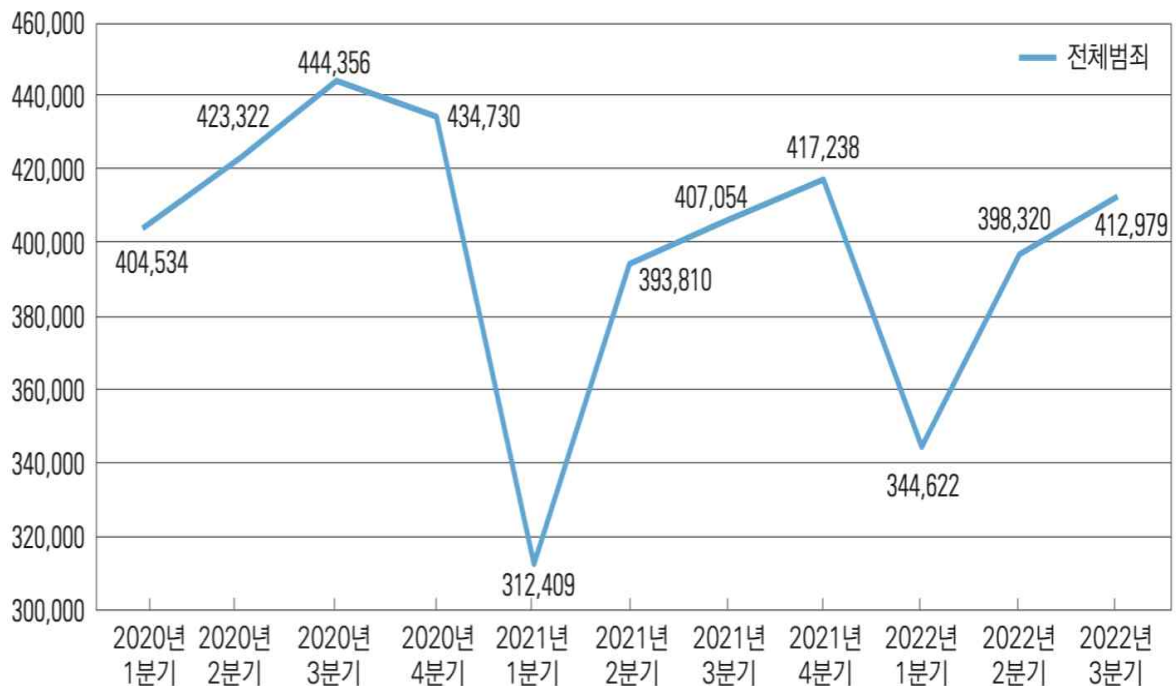
즉, 예산과 인력의 충원이라는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심리‘상담(counseling)’ 위주에서 심리‘지원(emotional support)’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에 대한 이런저런 심리‘상담’보다,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이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심리상담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일을 하면 되지만, 심리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센터 같은 시설도 필요하지 않고, 반드시 심리상담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Ⅲ. 범죄 발생 현황과 피해 유형

1. 최근의 범죄 발생 추이 및 표적 사건 사례

지난 3년간(2020~2022.3분기)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분기별로 등락 폭은 있었지만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1분기 404,534건→ 2023년 3분기 412,979건). (<표 1> 최근 3년간 전체범죄 발생 건수)

<표 1> 최근 3년간 전체범죄 발생 건수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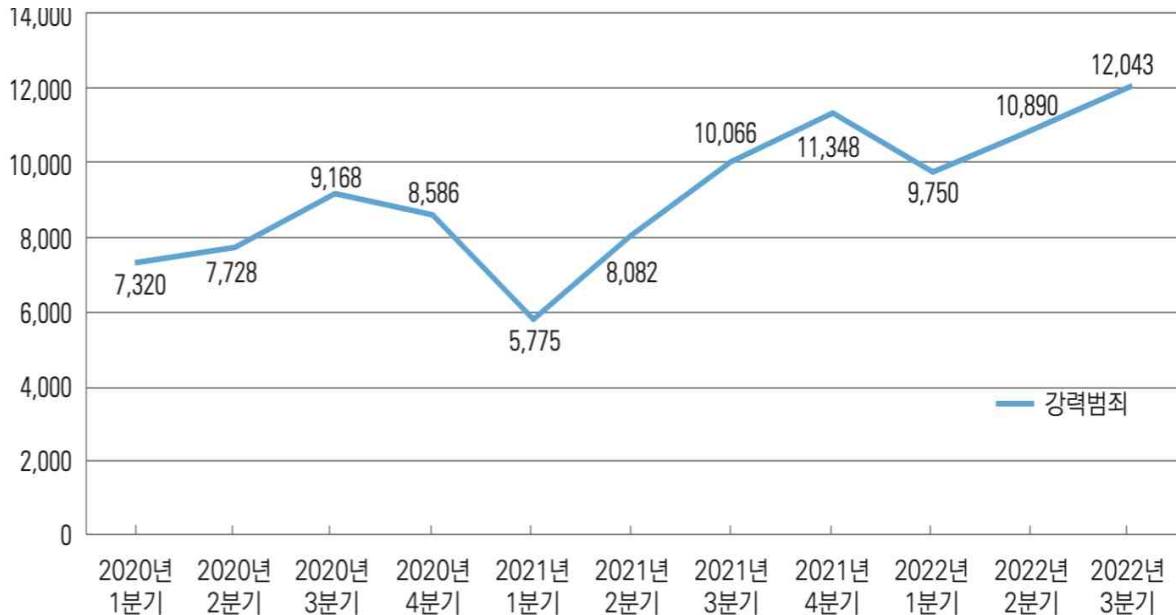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

같은 기간 강력범죄⁴⁾ 발생 건수도 증가했다. 2020년 3분기 9,169건에서 2022년 3분기에 12,043건으로 9.8% 증가한 수치이다. (<표2> 분기별 강력범죄 발생 건수)

3년간(2020.3분기→ 2022.3분기)의 범죄 유형별 발생 추이를 보면 살인(197건→ 192건), 강도(180건→ 148건), 방화(304건→ 278건) 등은 감소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증가(8,487건→ 11,42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강력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범죄로써, 이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을 5대 강력범죄로 구분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표 2> 최근 3년간 강력범죄 발생 건수 (단위:건)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

한편, 2022년 3분기에 발생한 강력범죄 12,043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성폭력(11,425건), 방화(278건), 살인(192건), 강도(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중 살인과 강도가 감소한 이유는 수사기법의 진화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많다. 즉, 과거에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지능범을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프로파일러 등 다양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공조수사 등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지능범에 대한 조기 검거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연쇄 범죄행각 이전에 덜미가 붙잡히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고등학교 자퇴 청소년이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유괴,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다.⁵⁾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7세 소녀가 어린이를 유괴 살인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은 충격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고, 범인의 ‘조현병’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⁶⁾

가해자의 나이와 성별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원한도,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아무런

5) “교문 나선지 10시간 만에 돌아온 ‘주검’, 용의자는 고교 자퇴생 (연합뉴스 2017.03.30.)

6)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범인은 정말 ‘조현병’일까? 일각에선 ‘사이코패스’ 주장 (경상일보 2017.04.02.)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6770>

이유도 없이 대낮에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주변 거주민들이 겪었을 충격과 놀라움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사건 발생 이후 아파트 주민 165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즉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이었는 것으로 밝혀졌다.⁷⁾

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층간소음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족 3명을 위층의 남성이 찾아가 흉기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남편은 오른손과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아내는 반신불수에 언어능력 퇴화라는 엄청난 장애를 갖게 되었다.⁸⁾

이 사건은 흉기 난동 범죄 그 자체보다도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현장 경찰관이 자리를 뜨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인 민간인 피해자가 칼에 맞은 채 가해자와 대치하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제압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⁹⁾ 직무 유기를 저지른 두 경찰관은 결국 해임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았다.¹⁰⁾

다.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입사 동기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접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역사 직원과 사회복지요원이 도착하여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했다. 그러나 구급대에 후송되어 병원에 실려 간 피해자는 수술 도중 결국 숨지고 말았다.¹¹⁾

7) 초등생의 참혹한 죽음 이후, 그 동네 모든 게 달라졌다. (동아일보 2017.07.26.)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726/85525995/1>

8)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징역 22년, 법원 “살인 미수지만 결과 참혹” (기호일보 2022.05.30.)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662>

9)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 2명 검찰 송치 (매일신문 2022.05.03.)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50314220846952>

10) 1인당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11)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 발생 (연합뉴스 2022.09.15.)

<https://www.yna.co.kr/view/PYH20220915036600013?input=1196m>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은 이미 한 차례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피소되어 직장에서 직위 해제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었으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처럼 끔찍한 살인한 저지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 2022년 6월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19~49세 서울시민 2,01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프라인을 통한 스토킹 피해 경험은 21.1%(425명),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 피해 경험은 23.2%(468명)이었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장소로는 ‘주거지’(27.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 유형은 ‘하지 말라고 의사 표현했음에도 계속 따라다니거나 연락하였다.’(16.8%), ‘집과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이 있다.’(11.8%) 순이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오프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계속 피해에 대한 경험이 생각난다.(15.9%)’, ‘불안과 우울(13.8%)’, ‘죽고 싶다는 생각(3.6%)’을 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대처 방법을 몰라서(20.7%),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듯해서(18.5%), 보복이 두려워서(16.3%) 순이었다.

피해 경험 후 필요했던 도움으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지지(21.9%), 더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19.1%),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대응(18.4%) 순이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전화 한 통이면 법률·심리·의료·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¹²⁾

2.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정서적 특징

범죄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신체적·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충격, 공포, 분노, 무력감, 불신, 죄의식, 대인기피와 은둔 등 심리적 피해도 겪게 된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차적·부수적 피해를 겪기도 한다.

12) ‘신당동 사건’ 3개월 만에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생겼다. (뉴스토마토 2022.12.14.)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6548>

가. 불안과 공포

범죄피해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는 대표적인 심리 피해 유형이며, 다양한 정서적·사회적 형태로 표현된다.

첫째, 불안과 공포는 우울증, 불면증, 긴장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로 나타난다. 특히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는 미제 사건이나 단기 형량 등의 이유로 출소하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등은 보복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는 타인에 대해 불신이나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확대된 형태의 범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범 불안 장애의 경우는 공황 발작, 외로움, 분노, 불안,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플래시백 현상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표 3> 범불안장애에 대한 주요 진단기준

증상	
범불안장애의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직장, 학교, 일상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눈에 띄는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걱정	미래의 사건, 미래의 활동, 직장, 가족, 건강, 재정 상황, 대인관계
정신적 반응	안절부절못하거나 긴장, 초조하고 신경이 곤두선 느낌, 잘 놀람, 짜증이 늘어남
신체적 반응	근육 긴장, 떨림, 근육통, 몸살 기운, 피로감, 땀 흘림, 메스꺼움, 설사, 두통, 빈뇨
인지적 반응	집중하기 어렵고 멍한 느낌, 불면
진단기준	
1. 일상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걱정(염려)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 2. 불안과 걱정을 조절하기가 어려움 3. 불안과 걱정은 다음 가지 증상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증상과 관련이 있음 1) 안절부절못하거나 긴장, 초조하고 신경이 곤두선 느낌 2) 쉽게 피로해짐 3) 집중하기가 어렵고 멍한 느낌 4) 짜증이 잘 남 5) 근육의 긴장 6) 수면장애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가 어렵고, 밤새 만족스럽지 못한 수면 상태)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www.nct.go.k)>

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심한 감정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식과적 장애로서 전쟁, 자연재해, 사고뿐만 아니라 폭력, 성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 등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발병률이 높는데, 그에 따른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일상생활의 문제로서 집안일, 학교생활, 또는 직장 생활 등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생활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피해망상이나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대인관계 자체를 피하게 된다. 셋째, 직장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다.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에도 큰 지장을 받는다. 넷째,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다. 악몽과 불면증, 식욕 부진은 물론 잦은 음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표 4>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및 진단기준

증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고 직후에는 사고와 관련된 두려움, 악몽 등이 주된 증상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 다양한 문제들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사고와 관련된 악몽 - 사고와 관련된 장면이나 그때 감각, 느낌이 깨어 있는 동안 생생히 재현되는 플래시백 - 작은 소리에 놀라는 예민함 - 사소한 것들이 위태롭고 위험해 보이는 느낌 - 사고를 떠올리는 사람, 장면 등 모든 자극을 피하게 됨 - 가만히 멍하게 있거나 무기력증에 빠짐 -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불안해 함 - 사람들과 동떨어진 느낌, 나를 이용하려는 것 같은 느낌 -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죄책감, 분노 등의 감정

진단기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할 만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평가하며 확진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1개월간의 관찰기간이 필요합니다. 뇌MRI검사나 혈액검사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사고	외상후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은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는 위기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자극입니다. 자신이 직접 크게 다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하는 정도의 경험 혹은 타인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경우의 중대한 사건들이 증상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으로 인해 사고와 관련된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기억해내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심리적인 억압 현상이 나타나서 사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관찰이 정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사고 직후 며칠 동안 악몽이나 사고 생각이 반복적으로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신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일에서 1주일 정도 이후에 증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1-2주 사이에 좋아지고 경우에 따라서 1달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미만으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합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이후 한 달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를 얘기하는데 이는 그 한 달을 기준으로 기간을 넘어가는 경우 그 증상의 정도나 지속기간이 분명하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재경험	사고에 대한 생각, 느낌, 감각이 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꿈에 나타나는 악몽과 깨어 있는 동안 경험되는 플래시백이 있습니다. 재경험은 사건 자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극들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작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버락 치는 것에 놀라거나 화재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타는 냄새에 예민한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사고와 관련된 사람(사고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 때 다친 상처가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경험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생활이 위축되고 두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과각성	재경험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고 경험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내게 됩니다. 항상 신경을 쓰다 보니 극도의 예민 상태가 지속되어 쉽게 파곤해지고 잘 놀라게 됩니다. 잠을 들기도 어렵고 잠을 자주 깨는 것도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들 중 하나입니다.
회피	재경험을 유발하는 자극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자극으로부터 피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재빠르게 도망가기 위해서 문에 가까운 쪽에 앉거나 화재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둠이 두려워 불을 켜 놓고 자거나 하는 증상 들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지나칠 경우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부정적 기분	사고 이후에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나 사회나 환경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생겨납니다. 두려움, 죄책감, 불신, 피해의식 등이 생기게 됩니다. 재난 직후나 신체 손상이 동반된 경우 상당기간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향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신체검사	의사는 다른 신체 질환이 있는지 신체검사를 하고 건강에 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과 같은 공존 질환이 신체 증상들을 많이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일반혈액검사나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통해서 내분비계 등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적 평가	정신건강전문가는 증상, 생각, 느낌 및 행동 양상에 대해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검사	환자 스스로 작성하는 자가보고척도와 함께, 숙련된 임상심리사와 진행하는 심리검사는 증상 평가와 환자가 가진 방어기제 및 내적 자원의 평가를 통해 치료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www.nct.go.k)>

다. 자존감 하락

범죄를 겪게 되는 경우, 인격적 가치나 안전을 침해당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행동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저하될 수 있다. 외부의 공격 앞에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체념과 무력감도 커지게 된다.

라. 분노와 불안정감

대부분 범죄피해자는, 범죄를 겪게 된 이후 분노와 불안정감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분노는 가해자에 대한 원한과 불신을 촉발하고, 이는 복수에 대한 강렬한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주변 환경과 타인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불안감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때로는 정신 건강까지 악화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분노나 불안정감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보복 범죄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감정이다. 201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을 보복 살해한 사례가 있었고, 2021년 호주 시드니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마. 사회적 고립

범죄피해자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차적 피해를 겪기도 한다. 자신이 당한 범죄에 대한 수치심이나 부끄러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어려워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으로 인해 고립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심리적 상처나 트라우마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예도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범죄에 대한 깊은 상처와 피해로 인해, 타인과 쉽게 소통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결국 우울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보복 범죄 혹은 자살, 자해 등의 극단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IV. 각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1.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크게 피해자의 신변 보호, 형사 절차상 피해 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보상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등이 있다.

가. 신변 보호제도

신변 보호는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일시적 신변경호, 피해자 주거지 맞춤형 순찰 등의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조서 작성 때에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변을 보호해 주는 가명 조치 제도가 있다.

또한 가해자의 추가 범죄가 두려워 귀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국가시설에서 일정 기간 지낼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거나, 보복 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수사 초기 숙소를 제공해주는 임시 안전 숙소 제도 등이 신변 보호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나. 형사 절차상 피해 보호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상 보호제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심문 절차에 참여하거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진술 제도, 형사 절차상 사건의 진행 상황을 범죄피해자에게 안내해 주는 통지제도 등이 있다. 또한 정보통신 시대에 발맞춰, 웹이나 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사법절차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 정보 제공 제도가 개설되었다.

아울러 가족이나 지인과 동행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석 제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선변호제도가 있다. 이 밖에 어린아이 또는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를 통해 지원하는 진술 조력인 제도 등이 형사 절차상 피해 보호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다.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보상 지원제도

범죄로 인해 유족이 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는 경우 부양가족 수,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3,000만 원을 지급하는 범죄 피해구조금 제도가 있다. 장애 구조금의 경우는 1급에서 6급까지 나뉘어있으며,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표 5> 우리나라의 기관별 심리지원 제도 매뉴얼

피해자 심리
전문인력
(CARE요원 등)
(경찰청)

가 ▶ 피해자심리전문인력(CARE요원 등) (경찰청)

○ 개요

- 심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양성하여 강력사건 피해자에게 심리적 응급처치(Phychological First Aid)부터 사후 연계까지 원스톱 전문서비스를 제공

※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

○ 자격

- 전문적인 위기개입·지원·대응을 위해 심리학 분야 석사 이상 또는 심리분야 학사 졸업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경장 특채)

○ 역할

- (심리적 응급처치) 살안·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직후 피해자와 가족 등 대상으로 초기단계 심리적 위기 개입을 통해 심리적 장애(트라우마)를 예방
- (형사절차 조력) 형사절차 정보제공 및 참여 지원, 수사절차 또는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 (전문기관 연계) 피해 평가를 통해 적절한 전문기관 연계
- (교육 등)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일선 경찰서를 지도·감독·교육

○ 문의 각 시도청 수사과 피해자보호계(팀)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법무부)

나 ▶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법무부)

○ 개요

- 강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 대상

- 살안·강도·강간·방화·상해·기타 강력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범죄현장을 목격하는 등 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센터장의 결정으로 지원 가능

○ 내용

- 강력범죄피해자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심리상담 및 진단평가, 심리치료 등 실시

전국 스마일센터 현황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	동부	서울 송파구 뚝섬로22길 27 02-472-1295
	서부	서울 마포구 성산로8길 6 02-332-1295
부산	부산 금정구 금성로 371	051-582-1295
인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272	032-433-1295
광주	광주 동구 구성로 163	062-417-1295
대구	대구 수성구 만촌로 148	053-745-1295
대전	대전 서구 광마로 139	042-526-1295
춘천	강원 춘천시 동내면 공치로 70-67	033-255-1295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원로 387	063-246-1295
수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031-235-1295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뚝방로 578	031-841-1295
청주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12	043-218-1295
울산	울산 중구 성안로 218	052-707-1295
창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902번길 14	055-546-129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1길 9	064-742-1295
목포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	061-277-1295

외상노출 피해자 연구 (경찰청·이화뇌융합 과학연구원)	다 외상노출 피해자 연구 (경찰청 · 이화뇌융합과학연구원) ○ 개요 - 이화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 범죄피해로 외상에 노출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뇌과학 기반 검사 등을 통해 신속한 정신건강 증진 도모 ○ 대상 - 범죄피해로 인해 외상(트라우마)에 노출된 피해자* 및 그 가족 중 희망자 * 접근성 등 고려, 서울·인천·경기 지역 피해자 중에서 선정 ○ 절차 및 내용 - (대상자 연계)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희망서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뇌융합과학연구원에 송부하여 연계하고, 대상자 명단을 시도청에 보고하며, 시도청은 이를 취합하여 매월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 - (검사 및 연구 등) 이화여대는 피해자에 대한 뇌과학 기반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 치료 여부 판단, 그 결과를 제공하여 골든타임 내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 유도, 연구를 기반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치료프로그램 개발 주요 검사 종류 및 내용 <table> <tr> <th>유형</th><th>내용</th></tr> <tr> <td>기본검사 (혈액검사)</td><td>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 시행 (빈혈, 간신장 기능, 고지혈증, 갑상선기능 등 검사)</td></tr> <tr> <td>전문가 면담</td><td>전문가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평가 및 기타 정신과 질환 진단평가</td></tr> <tr> <td>신경인지기능검사</td><td>대면 검사 및 컴퓨터 기기 이용 검사 (기억력, 주의집중력, 실행능력, 전두엽기능, 언어기능 등 인지기능 전반에 대한 검사)</td></tr> <tr> <td>뇌자기공명영상 (MRI검사)</td><td>외상후스트레스성 뇌질환과 관련된 뇌기능 이상, 뇌종양, 뇌혈관 질환 등 뇌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일반검진 역할</td></tr> <tr> <td>양전자방출단층영상 (PET검사)</td><td>뇌기능 이상을 비롯한 전신종양 및 각종 질환 발견 가능</td></tr> <tr> <td>신경생리검사</td><td>심박도 변이, 피부전도 등 신경생리기능을 보다 자세히 평가 가능</td></tr> </table>	유형	내용	기본검사 (혈액검사)	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 시행 (빈혈, 간신장 기능, 고지혈증, 갑상선기능 등 검사)	전문가 면담	전문가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평가 및 기타 정신과 질환 진단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대면 검사 및 컴퓨터 기기 이용 검사 (기억력, 주의집중력, 실행능력, 전두엽기능, 언어기능 등 인지기능 전반에 대한 검사)	뇌자기공명영상 (MRI검사)	외상후스트레스성 뇌질환과 관련된 뇌기능 이상, 뇌종양, 뇌혈관 질환 등 뇌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일반검진 역할	양전자방출단층영상 (PET검사)	뇌기능 이상을 비롯한 전신종양 및 각종 질환 발견 가능	신경생리검사	심박도 변이, 피부전도 등 신경생리기능을 보다 자세히 평가 가능
유형	내용														
기본검사 (혈액검사)	혈액검사 및 심전도 검사 시행 (빈혈, 간신장 기능, 고지혈증, 갑상선기능 등 검사)														
전문가 면담	전문가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평가 및 기타 정신과 질환 진단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대면 검사 및 컴퓨터 기기 이용 검사 (기억력, 주의집중력, 실행능력, 전두엽기능, 언어기능 등 인지기능 전반에 대한 검사)														
뇌자기공명영상 (MRI검사)	외상후스트레스성 뇌질환과 관련된 뇌기능 이상, 뇌종양, 뇌혈관 질환 등 뇌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일반검진 역할														
양전자방출단층영상 (PET검사)	뇌기능 이상을 비롯한 전신종양 및 각종 질환 발견 가능														
신경생리검사	심박도 변이, 피부전도 등 신경생리기능을 보다 자세히 평가 가능														

<출처: 2022년 피해자 보호·지원매뉴얼. 국가수사본부>

또한 △범죄 피해로 인해 기존에 주거지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 국민임대주택(우선 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해주는 주거지원제도, △범죄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종합정보제공, △상담과 심리 치료 및 임시 보호 거처의 역할도 수행하는 스마일센터 등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보상 지원제도에 해당한다.

라.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과 법률 서비스 지원제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 형사사건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가정 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는 흔히 말하는 “합의”라는 제도이다. 합의의 내용이 당

해 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재판에서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것을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배임·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 간 형사 분쟁이 공정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형사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복구를 받는다.

또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일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률상담터제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제도가 있다.

2. 주요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가. 미국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민간단체 등의 큰 거버넌스 체제로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관련 법안과 제도의 개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지원법(Victims of Crime Act, VOCA) : 1984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Crime Victims' Rights Act, CVRA) : 2004년 제정된 법령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 연방 범죄피해자보상법(Crime Victim Compensation Act, CVCPA) : 1984년 제정된 법령으로,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

한 보상을 제공

② 현행 범죄피해자보호제도

미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사회보장적 측면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으며,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민간영역의 피해자지원단체에 의해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되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사법부 직속으로 범죄피해자대책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도모한다.

미국의 각 주는 1982년 「범죄피해자 및 증인 보호법」을 제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다루는데,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 △소송 및 다양한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공판장에 출석할 권리, △가해자에 의한 협박 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연방정부와 대다수 주 정부에서 범죄피해자에게 형사 절차상의 중요사항을 통지해 주는 규정을 통해 단계별로 피해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을 최우선 목적으로 1985년에 범죄피해자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NCVC)를 설립하였는데, 이 센터는 공공 정책에서 범죄피해자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법률적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2021년 4월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연방 기관과 주 정부, 비영리단체들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지원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과 범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논의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개발

- 폭력 범죄 대응 강화 : 선제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단체들과 함께 범죄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 총기 법규 강화 : 불법적으로 총기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기 보유자의 배경 조사와 총기 규제 강화 등의 대책 추진
- 교통안전 강화 :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 강화와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 형평성 확보 : 범죄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이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지 검토
- 협력 체제 강화 : 연방, 주와 지자체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

나. EU

EU(유럽 연합)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신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제도와 문화에 맞게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EU의 대표적인 범죄피해자보호제도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 권리에 관한 EU 지침 (EU Directive on Victims' Rights) : 2012년에 제정된 법률로, 모든 EU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
-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 지위에 관한 법적 결정 (Framework Decision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 EU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제도
- 유럽 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유럽 인권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법률로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인간적 대우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조항 제공
-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EU 지침 (EU Directive on Compensation to Crime Victims) : 범죄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

유럽 각국은 이와 같은 EU의 입법 취지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09년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이 밖에 프랑스와 덴마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탈리아의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범죄피해자 보상법」 등은 EU 차원의 피해자 보호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 덴마크

이 중 덴마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덴마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EU의 범죄피해자 권리 지침에 따른 피해자 권리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범행 신고나 증거 제출, 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러 지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제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 범죄피해자는 항상 존중되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는 범죄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지원

- 범죄피해자는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에게 법적 조치나 범죄에 대한 정보, 심리적, 정서적 지원, 치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

-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의 신원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 범죄피해자의 상담사나 도움을 주는 자는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 범죄피해자 보상

-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보상의 대상은 범죄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심리적 피해, 소득 상실 등)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령과 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덴마크의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

- 범죄피해자가 직면한 문제를 접수하고 해결하는 일종의 전화상담센터 역할

- 범죄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 심리 치료, 법률적 지원, 주거, 경제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법률적인 지원과 보호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접촉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호

- 사회 재활 지원 서비스

- 범죄피해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지원

이 가운데 덴마크의 자립·자활 지원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들이 교육과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모범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덴마크는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① Kriminal for sorgens Job center 프로그램

- 직업교육
 - 범죄피해자가 취업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
- 일자리 지원
 - 범죄피해자에게 일자리 찾기와 취업을 지원
 - 구직 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상담
 -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
- 재미 교육
 - 예술, 스포츠 및 문화 활동 등 분야에서 취미생활과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사회적인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

② Verge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와 범죄자 간의 대화를 끌어내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범죄행위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법률 시스템 내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도와준다. 또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심리적인 지원도 제공하는 등 여러 법률 지식과 자문을 제공한다.

즉, 이 프로그램은 심리상담과 같은 서비스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들이 범죄의 충격과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의 지원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라. 일본

일본은 오래전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일본의 피해자지원 문제는 1991년 열린 심포지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 전국

적으로 다양한 민간피해자지원단체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많은 범죄피해자가 있었지만, 이들이 국가기관에 범죄를 신고하지 않아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민간단체와 조직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피해자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조직이 공공 기관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일본 역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피해자 조기 지원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물질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법령,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범죄피해자 지원법(犯罪被害者等支援法,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 범죄피해자가 가지는 권리와 그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보호조치 등을 규정
- 가정폭력방지법(家庭内暴力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Act on the Prevention of Spousal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 가정 내 폭력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
- 아동학대 방지법(児童虐待等の防止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Act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 규제법(風俗営業等の規制及び業務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Act on the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Amusement Business, etc)
 -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
- 성범죄 피해자 지원법(性犯罪被害者等への支援に関する法律,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Offenses)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성범죄 피해자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규정

일본은 범죄피해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로, “자기 도움”이라는 개념

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능력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기 도움”의 개념은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보완과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2020년 4월)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상담 지원인력 강화, 피해자 상담프로그램 확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설(2020년 6월)
 - 규제 개혁 방안과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설계획 발표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범죄 예방에도 기여
- 디지털 범죄피해자지원 강화(2020년 9월)
 - 디지털 세상에서의 범죄피해자지원 강화 방안 발표
 - 디지털상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 디지털상에서의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노인 범죄피해자지원 강화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피해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노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
 - 2021년 4월, 노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강화

-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확대

마.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EU와 덴마크,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 지원범위의 확대, 둘째, 법적인 보호 수준 강화, 셋째, 보상제도 및 지원 시스템의 구조적 체계화 등이다.

첫째, 지원범위 확대의 필요성이다. 미국의 경우, 강간, 폭행,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해 피해자지원을 제공하고 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청소년성매매, 형사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범위의 확대가 필수불가결해 보인다.

경찰청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건수는 102만 39건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살인, 강도, 절도 등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 교통사고, 사이버범죄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견고하게 강화해야 함은 물론 증가하는 범죄 유형별 피해자 지원범위의 확대 등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적인 보호 수준의 차이다. 덴마크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해 다각화된 지원을 목표로 지원내용 또한 촘촘하게 규정된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범죄피해자 보호 근거 법령은 최근에 입법화된 것이 주를 이루며, 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범죄 피해 현장에서는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조기 사회적응 훈련에만 집중한 결과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보상제도 및 지원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다. 유럽의 경우는 범죄피해자의 보상제도 범위가 물질적, 심리적, 관계적, 사회복귀 등 다차원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역시 유럽은 정신적 지원, 신체적 치료, 거주 및 일자리 지원 등으로 다

각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유럽 대부분 국가는 범죄피해자를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주체로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는 법적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를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와 지위 또한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3. 주요국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

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지원은 국가와 각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법률 상담,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995년에 설립되어,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거쳐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자아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사들이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치유를 돕고, 자아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치료를 진행하여, 상호작용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공감과 지지를 경험하며, 각자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씨: A씨는 성폭행 피해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상담과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안정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A씨는 자신의 심리적 회복을 이루어내고, 삶의 질을 회복하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재개했습니다.

B씨: B씨는 가정 폭력 피해로 매우 낮아진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겪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그룹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B씨는 다른 피해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자아 회복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위와 같이 한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회복과 사회적인 재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②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연합회는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문 상담사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과 자기 존중감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과 심리 치료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재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자기 존중감을 상실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존감을 회복할 수 돕고 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재난 상황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복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연합회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회복과 재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다시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기의 가치를 회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③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이 범죄 피해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기관으로, 2010년 7월 서울 동부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개 지역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일센터는 위기 개입에서부터 중·장기적인 심리적 개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례 코디네이터를 통한 1:1 밀착 케어, 법률 상담, 교육, 연구,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피해자보호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스마일센터 16개 지역 센터가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심리지원, 임시 주거(생활관) 제공,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3가지 핵심 사업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 상담, 사회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범죄 발생 이후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일센터 상담 수기: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어두운 길을 가는 것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곤 했지만, 나는 어김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그 남자를 보았다. “이 밤에 왜 저기 서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무시한 채 지나가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나의 목을 감쌌다. 아는 사람인가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점점 강한 힘이 가해졌다. (중략)

상담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일상생활이 많이 편해졌다. 그 일이 없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내가 잘 대처해서 범인이 도망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불안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지에 알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며 이제는 상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3개월 전 첫 상담 때 “과연 괜찮아질 수 있을까? 라고 했던 나에게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어, 선생님 믿고, 너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아봐“라고 답해주고 싶다.

위와 같이 스마일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 심리전문가들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평가 및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깊이 있는 학술 연구를 통해 범죄 피해의 심리적 영향 평가, 치료 방법 개발, 예방대책 수립, 정책 제언 등의 전문적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나. 미국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1982년 연방정부가 “피해자나 증인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84년에 “범죄피해자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각 주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금 마련의 토대가 되었다.

위와 같이 마련된 보조금으로 미국 전체를 기반으로 한 “전국피해자 지원기구”와 “전국 범죄피해자 보호센터“가 운영,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심리프로그램으로 “폭력피해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의 다양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전국피해자 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

미국 전국피해자 지원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NOVA)는 1975년 설립되어 주요 범죄피해자 지원기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NOVA는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와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 범죄피해자 지

원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첫째, NOVA는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심리적인 트라우마, 법적인 절차, 범죄 예방 등에 관련된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 1. NOVA 웹사이트(www.try-nova.org)〉



둘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듣고 이해하며, 필요한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생을 지원한다.

셋째, 범죄피해자들이 법적인 절차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적인 절차에 대한 정보와 자문, 법률 대변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범죄피해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법률 개정과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은 카운슬링과 변호사로 구성된다. 카운슬링은 정신의학적 접근의 심리 치료보다는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언과 지원에 대한 안내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리 치료는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변호사는 경찰서나 병원 동행, 법률 기관에서의 지원과 같은 서비스로 위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부담을 없애고 여러 선택을 하기까지 고민을 경청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공감하여 피해자들의 고립감을 완화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NOVA의 역할과 노력은 많은 성공사례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은 심리적인 회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은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NOVA는 미국 범죄피해자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범죄피해자들의 권리와 안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전국 범죄피해자 보호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NC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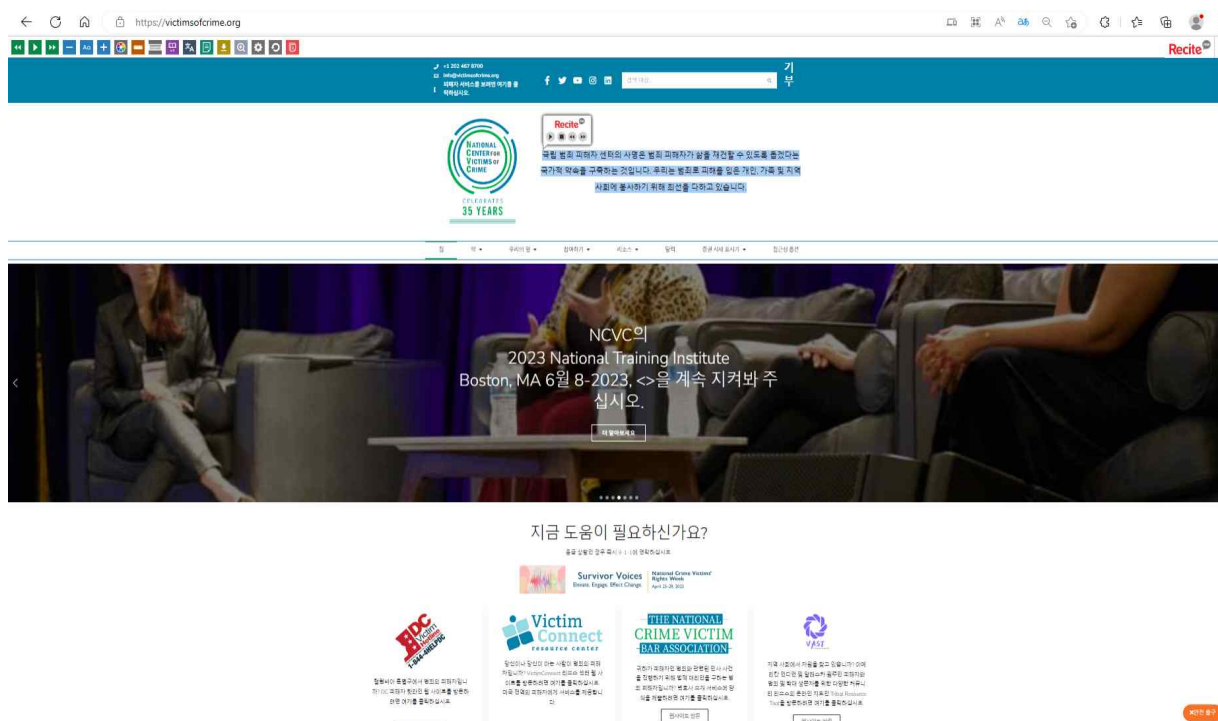
전국 범죄피해자 보호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NCVC)는 1985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며, 지역 교육·계몽,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사법에서 피해자 지위 향상’, ‘전문가 교육’ 부문으로 전국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소개, 피해자 권리의 명문화화를 위한 각종 법률의 수정 운동, 전국 범죄피해자 변호사회와 연계, 민사소송 후원, 전문가 교육 등에 현재까지 많은 범죄피해자를 지원했다.

NCVC는 범죄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CVC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이바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National Compassion Fund”으로 이 프로그램은 대규모 재앙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피해자들과 관련된 기부금을 통해 피해자들의 의료비, 장례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Stalking Resource Center” 프로그램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법률 자문, 보호조치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안전과 심리적인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끝으로 "National Training Institute"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신 지식과 전문 기술을 전달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에서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2. NCVC 웹사이트(victimsofcrime.org)〉



NCVC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과 노력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은 범죄피해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③ 폭력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s of Violence Program; VOV)

케임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Cambridge Health Alliance; CHA)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인 폭력피해자 지원 프로그램(Victims of Violence Program) VOV는 전문 의료진으로 운영되고 있다. VOV 프로그램은 1984년 Cambridge 지방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설치·운

영되었고 피해자 맞춤 의료지원, 대학원 임상의 수련,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¹³⁾

VOV는 폭력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고 피해자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VOV 핵심적인 기능과 서비스로는 첫 번째로 폭력피해자들의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개인별로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재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로 폭력피해자들에게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험한 외상을 처리하고,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상담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제공되며, 피해자들의 감정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자기 존중감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세 번째로 폭력피해자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법률 자문,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법정 절차 동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법률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로 폭력피해자들을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로 연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의료 서비스, 긴급 숙박 시설, 금융 지원,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삶을 재건하고 독립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VOV 프로그램은 폭력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상황을 극복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폭력피해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다. 일본

일본은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에 있어서 「기본계획」에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노력 중 보건·의료와 같은 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구체적 정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부 기관인 후생노동성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 의료보험 확대 시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범죄피해자가 각종 지원을 받도록 응급조치 시스템을 개발·운용하였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피

13) 한국형사소송법학회(2011)

해자, 장기적 의료지원을 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 점, △성폭력 피해자나 청소년 피해자들에게는 당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전문가를 육성하여 적절한 의학적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하도록 한 점, △범죄피해자 등에게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법을 내용으로 하는 의학교육을 지원하는 점, △법조인과 대학원 로스쿨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치유를 위한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의학적 치료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였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관한 의학교육을 확대 시행하였다. 또한 학교와 아동보호센터의 연계 강화하고, 교육기관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피해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들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에도 "혐오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2010년에 설립하여, 혐오범죄 피해자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맡고 운영되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법률 지원, 치료 및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법적인 근거와 지침을 보완하고, 상담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과 인력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라. 영국

영국의 커뮤니티 베이스드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지원과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커뮤니티 베이스드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기반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의 범죄피해자 지원 그룹, 재범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감시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범죄피해자들이 범죄로 인

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더 나은 삶을 이루도록 지원한다.

커뮤니티 베이스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지원과 연대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피해자들의 특정한 문제와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들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영국의 커뮤니티 베이스드 프로그램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품질의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마다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지원 서비스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서 같은 피해자들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자원의 한정성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확장과 지원범위의 한계이다.

셋째, 커뮤니티 베이스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협력과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커뮤니티 베이스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지원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원자들을 교육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예산의 증액을 통해 프로그램의 확장과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수준에서의 지원과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국의 커뮤니티 베이스드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연결을 제공하여 피해복구를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미국, 일본, 영국 주요 국가의 심리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의 제공이다. 심리지원 서비스는 위기 개입 단계에서부터 장기적인 서비스와 연구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 등 피해자의 자립과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기관 간 전문 심리지원 서비스 협력이다. 국가 중심 기관과 비영리 조직으로 이루어진 관련 기관 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NOVA의 경우 위기 개입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과 자원봉사자 양성 등 역할을 하고 있으며, NCVC의 경우는 범죄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정책 및 입법 운동을 지원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심리지원 서비스는 피해자지원이다. 피해자 심리지원은 전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접근이 용이하고 즉각적이며 체계적인 서비스이다.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장소는 대상자들이 접근이 쉬워야 한다. 24시간의 위기 상담 전화로 피해자와 가족,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접근이 쉬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심리지원뿐 아니라 피해 발생에서부터 사회로의 복귀, 재화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다. 대부분의 해당 기관은 국가 기금과 보조금으로 민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 관련 업무를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심리지원의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다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일 것이다.

끝으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의 양성 교육, 홍보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은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역사회가 대상자를 지켜주고 있다고 안심하게끔 하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사회에 복귀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체계 현황과 대책

가.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의 어려움 및 대책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가 범죄피해자가 심리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는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 자신은 심리지원 서비스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현대사회에서는 범죄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신 건강 문제를 공개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심리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요인으로 유교문화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약점이나 부족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감추거나 숨기는 경향을 가질 수 있으며, 심리지원을 받기 꺼릴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심리상담이나 지원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일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심리지원 서비스의 존재와 이용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예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자긍심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일부 피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자긍심이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인해 심리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부족을 극복하고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관에서는 심리상담 및 지원의 중요성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여, 국민에게 정신 건강 문제와 심리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촉진하고, 심리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인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에 관한 대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정신적 어

려움을 가진 개인들이 심리지원을 받는 것을 부끄럽거나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정신 건강에 대해 열린 대화와 이해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심리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담 서비스, 심리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심리지원 활동 등을 포함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개인들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이는 개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심리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지원 전문가들과의 상담, 동료 지원 그룹, 정서적인 어려움을 다루는 자원을 제공하는 플랫폼 등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인식

범죄피해자의 심리지원 서비스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심리지원의 필요성이나 정책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검찰이나 경찰의 관계자들은 주로 범죄 수사나 법적 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 심리적인 지원이 법적 절차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지원은 범죄 수사와 관련된 다른 우선순위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 수사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심리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자들에게 범죄피해자의 심리적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심리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지원은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경찰, 심리지원 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끝으로 범죄 조사나 수사 업무에 심리지원 요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한 접근과 조치를 적용하고, 범죄피해자들이 심리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지원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지원 및 상담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관계자들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적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사, 정신 건강 전문가 등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내부에 전문적인 심리지원팀을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와의 협약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한 접근 방식을 개발 또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 피해자 등 특정 범죄 유형에 따라 심리지원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나 특정 사건, 대규모 범죄 발생 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사항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자들도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지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접근성

범죄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방문과 관련하여 가장 큰 한계는 접근성의 문제일 것이다. 스마일센터의 경우 현재(2023년05월) 전국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별 1개소 이상을 설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나, 여성 아동센터의 경우 스마일센터보다는 상황이 다소 양호하지만 시도별 2개소가량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서비스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되지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서비스 기관에 접근하기 힘들게 되면 포기하는 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의 문제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도 포기하거나, 심지어 서비스를 개시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상담을 담당하는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모바일 심리지원 앱, 온라인 상담 플랫폼 등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동형 심리지원 서비스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심리지원을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심리지원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담, 텍스트 기반의 심리지원, 그

롭 치료,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끝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 상담소나 병원,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5. 경찰의 범죄피해자 피해복구를 위한 심리적 지원 현황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전문인력(피해자 심리 전문요원 및 위기 개입 상담관)을 활용하여 범죄 발생 직후 응급 심리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으로의 장기 심리상담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표 6> 경찰의 응급심리지원 지원내용

응급 심리지원 내용
▶ <심리진단·평가>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VTS) 등 다양한 심리진단 도구 활용, 피해자의 심리상태 분석 및 평가
▶ <심리적 응급처치> △신뢰관계 형성 △정서적 위로·지지 △피해자 요구사항 파악·조치 △피해자 지원제도 정보 제공 등
▶ <심리교육> 범죄피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쇼크 △기억단절 △현실부정 등 심리적 반응 안내 및 대응요령 교육

<출처: 2022년 경찰백서, 경찰청>

또한 경찰은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사법기관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 네트워크의 중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경찰관서별로 △관계 정부 기관(법무부·여가부·복지부 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지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맞춤형 지원 사례 회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중요 사건 발생 시 사례 회의를 통한 종합적 지원활동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하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워 전년 대비 지원 연계 건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표 7> 경찰청 연도별 응급 심리지원 활동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맞춤형 지원 사례회의	0	0	461	1,072	708	552
지원 연계	25,060	16,847	13,310	20,042	23,889	22,958
심리상담	13,580	10,443	4,552	9,047	10,669	8,462
경제적 지원	4,474	3,855	6,855	8,829	11,423	12,946
기타	7,006	2,549	1,903	2,166	1,797	1,550

<출처: 2022년 경찰백서, 경찰청>

또한 회복적 경찰 활용 운영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응보적 사법’은 가해자 처벌에만 중점을 두어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이러한 ‘응보적 사법’에 대한 반성에서 가해자·피해자·공동체 사이의 대화를 통해 피해복구와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 이념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사법 제도는 검찰의 형사조정제도와 법원의 화해 권고제도가 있으나, 형사조정은 금전적 배상에 관한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고¹⁴⁾, 화해 권고는 법원 단계에서만 회부가 가능하여 화해가 너무 늦다는¹⁵⁾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은 2019년부터 ‘회복적 경찰 활동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등 피해자·공동체 중심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8> 경찰청 회복적 경찰 활동 시범운영 결과



<출처: 2022년 경찰백서, 경찰청>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 중 86%가 대화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14) 김지원·강동욱, 2018,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5) 신한미, 연도 불상, 소년심판과 회복적 사법-화해 권고를 중심으로

V. 범죄피해자의 심리 치료 지원 체계 개선방안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범죄 유형별로, 신속하고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과 제도를 정비한 탓에, 관련 연구도 미흡하고 정책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에 부딪친 피해자들을 최대한 피해 이전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즉, 범죄피해자 상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범죄피해자의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위한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정비,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비대면 상담 등 상담 방법의 다양화이다.

1. 상담사와 활동가의 전문성 강화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은 피해자지원 활동가와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현장 위주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구조화된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교육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한 분야에 집중된 기존 교육제도나 산발적인 유사 교육과정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기존의 유관 자격증을 보유한 피해자지원 활동가들은 상담에 치중하며 여러 활동을 겸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활동가나 상담사들은 개별 범죄유형에 따른 통합적 대처 능력이 부족해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지 못할 우려도 크다. (김소라, 2017).

따라서 피해자지원 상담사나 활동가로서 피해자 욕구에 부응하는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과정 교육을 통한 국가공인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격취득 후 실무중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단계별 보수교육과 수련 과정을 거쳐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함으로써 상담사나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범죄피해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여러 유형의 심리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사회복귀 상담은 매우 중요한 서비스 영역이다. 특히 범죄 현장에서의 경험은 자신감 상실과 자존감 저하 등 매우 부정적인 심리적 특징들로 나타날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징에 따라 상담 방향도 전문화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범죄행위로 인한 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치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외상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외상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시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등의 증상이 완화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Kilpatrick et al. 1987).

또한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아울러 범죄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상담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일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상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이다.

다시 말해 범죄피해자들의 외상 경험에 관한 이야기 수용과 인식 변화, 사회적 지원, 자존감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상담이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 상담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상담 전문가는 피해자들의 상황에 적합한 상담 방법과 접근 방식, 즉 상황에 따른 인지행동치료(CBT)나 인터페어런스(interference), 동적 상담 등의 전문화된 상담 기법을 적용하여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도와주어야 한다.

2.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정비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과 고통, 심리적인 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피해는 범죄피해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피해자 심리 치료와 재활 등의 업무를 총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

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들은 범죄 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Post Traumatic Ttress Disorde), 우울증, 불안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Kilpatrick et al. 1989; 크리머 외, 2001).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직장 상황과 가정생활, 일상적 대인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피해자들의 권리보호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이해증진 역할도 수행하도록 정비해 나가야 한다. 실제 이러한 프로그램들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개선과 재활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Langton et al. 2010).

대표적으로 미국의 피해자지원서비스국(Victim Support Services)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 법률 조언, 보호 프로그램, 심리 치료,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피해자들이 범죄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고 자기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컨트롤타워를 통한 지원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¹⁶⁾ 또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범죄 수사에도 적극적인 협조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범죄 대처 능력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심리적 지원은 사회적 자본 형성과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범죄피해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함에 따라 사회 및 경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계 법령과 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전문화된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윤상민 2013:153, 최영승 2009:284). 이를 위해 부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기관 간 업무영역을 체계화하고,

16) K. L. Krienert와 K. Walsh, "범죄피해자의 재활과 지원: 국가별 제도 비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의 업무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범죄피해자 심리센터의 역할 강화

범죄피해자 심리센터의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수록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해지며, 범죄피해자의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에 따르면 전문적인 상담 경험이 없는 상담원은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상담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Cheng & Lo, 2016). 범죄피해자 상담 전문인력은 심리학, 상담학 등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둘째, 상담원의 전문성과 상담 능력은 상담 대상자의 만족도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적인 상담원은 상담 대상자의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감을 높이며, 상담 대상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Turner et al. 2019).

셋째, 상담 대상자들의 상황과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전문 분야가 다르므로 다양한 유형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민감한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성폭력 피해 상담 전문가의 지식과 능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Walsh et al. 2016). 이처럼 범죄 피해 유형이 다른 만큼, 각각의 유형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상담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상담 대상자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서 전문성 못지않게 신뢰성도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전문인력 채용 시에 신뢰성 검증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상담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상담 대상자들의 다양한 문제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신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해야 한다(Parker et al. 2018).

4. 피해자 입장에 입각한 심리지원체계 구성

지원기관들이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유동적인 심리지원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기관의 입장이나 실정에 맞추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제도나 법률보조인 제도 도입과 안착이 시급하다.

피해자지원은 국가 차원과 민간단체 차원의 업무가 모두 존재한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의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협력해야 한다. 국가 예산지원에 있어서, 민간단체의 자율성 침해 소지를 최소화면서 다양한 민간단체의 균형 있는 성장과 활동을 도모하는 데 힘써야 한다.

5. 유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지원을 위한 유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실현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은 국가적 의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차원에서 기존의 지원범위보다 확장된 스펙트럼으로 보아야 한다(김소라, 2017). 특정 부처나 일부 단체들만의 역할이 아닌 범죄피해자의 직간접 피해복구와 2·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적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

6. 범죄피해자의 상담 관련 홍보 및 협력 강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2017년 166만 2,341건→ 2023년 142만 9,826건), 이 가운데 2021년의 범죄 발생 건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표 9> 최근 5년간 범죄 발생 현황(2017년~2021년)

(단위 : 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662,341	1,580,751	1,611,906	1,587,866	1,429,826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public03_2021.jsp)

한편, 범죄피해자의 심리상담 실적은 2018년 9,047건, 2019년 10,669건, 2020년 8,462건으로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대개 긴장과 불안감, 무력감 등의 엄청난 심리상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일부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려고 하지만, 심리적 충격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상담을 중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자신이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책과 부끄러움이 상담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범죄피해자는 타인을 불신하는 심리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감정은 상담사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상담사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불신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와 상담에 대한 신뢰를 재고하려는 방안으로, 피해자 상담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과 보호제도를 널리 알려,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홍보가 효과적이다. 지역사회 보건센터나 치료 시설, 지역 신문 및 방송국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 관련 단체와 협력도 필요하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피해 유경험자나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적극적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와의 협력이 상담 서비스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소셜미디어, SNS를 활용한 홍보 방식도 효과적이다. 소셜미디어는 범죄 피해자들과의 소통이나 정보 교류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상담 기관마다 소셜 미디어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병행해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광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 검색 시 노출되거나, 특정 목표화를 통해 해당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7. 비대면 상담 등 다양한 상담 방식의 도입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과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담이 보편화되면서,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상담에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온라인 상담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들의 대면에 따른 불편함과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고, 특히 지리적 이유나 교통환경 등으로 인해 방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통한 상담이 대면상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그룹 상담도 필요하다.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하는 것도 상당한 치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는 기술 테라피를 통한 상담도 심리 치료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술적 요소를 활용하여 심리 치료를 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가 언어를 통해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아트 테라피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한다. 이는 범죄피해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V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는 피해자 자신들보다는 공공의 몫이 크다 할 수 있다. 외국의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 효과가 검증된 심리 치료 방법은 널리 확산하고 보급해야 한다.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형태의 다양한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범죄피해자 유형별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상담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 치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에 공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하고 지원하는 일은 공동체 전체의 몫이다.

<참고문헌>

- 박형민(2014).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체계의 구축과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경성문화사*.
- 박봉진(2011).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법학연구*, 291~313.
- 강경래(2006). “민간 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 방안”. *피해자학연구*, 387~425.
- 강경희(2019).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잔디(2010).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서울법학*, 18(2), 213~250..
- 김소라(2016).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3(2), 5~17.
- 김재민(2008).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정부시책의 비교 연구 - 한·일 양국의 「범죄피해자기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6(1), 142~169
- 송재영(2019). “범죄피해자지원 구조의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은진(2018). “범죄피해 외상 경험자의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295~316
- 정지운(2009). “외국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1~89.
- 홍태석(2012).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와 우리의 개선방안”. *외법논집*, 36(4), 49~66)
- 장은진(2017). 한국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개관 및 방향제안, 451~459.
- 김근모(2019). “한·일 양국의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의 비교 연구”. *피해자학연구*, 27(3), 173~212.
- 전현욱, 장진환(2022).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Vol 22, 1~159.
- 김용세, 김재민(2007).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와 경찰관 교육방안”
-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대검찰청(2022). “분기별 범죄동향 레포트”
- 경찰청(2016). “피해자 보호·지원 매뉴얼.
- 김소라(2017).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체계의 개선방안”. *제11회 코바피해자지원정책포럼*.
- 김지영(2014).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체계의 구축과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언(2018). “범죄 피해와 범죄의 두려움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2(1), 55-80.

- 최영승(2016).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평가 및 발전 방향”, *피해자학연구*, 24(2), 109-138.
- 강동욱, 송귀채(2015),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 함병주, 이병철, 유혜림(2007). 『범죄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현황과 대책-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 *법무부*.
- 홍영호·이수정(2006).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지태·노성호 (2010).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하상구(2019). 치안정책리뷰(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제64호.
- 정병권(2021), 치안정책리뷰(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제71호.